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7. 8. ~ 7. 12.(5일)

○ 실시기관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과

○ 참여인원 : 컨설팅감사팀장 등 7명(외부2명)

○ 대상사업 : 2019년 현재 진행중인 도로·하천 및 공공건축, 상·하수도, 조경 등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감사중점사항

- 부당한 하도급 분쟁(대금지급 지연 사례)
- 부실한 감리로 건설안전 위협 및 시공품질 미달 행위
- 부적정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 과도한 규정, 감사 부담등으로 인한 소극적 행위 등

2. 감사결과

○ 행 정 상 : 10건(시정 5, 주의 4, 권고 1)

○ 재 정 상 : 119,400천원(감액)

○ 신 분 상 : 7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하수도시설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부적정

【기 관 명】 공주시(상하수도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표1]과 같이 ♠♠♠(◈◈)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5건을 통합하여 2017. 8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실시하여 ♣♣엔지니어링 등 1개사와 계약하여(1,771백만원) 2020. 9. 23. 준공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1] 공주시 하수도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추진				통합건설사업관리		
		실시설계	공사기간	공사비 (백만원)	시공사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용역사
계	5개지구			27,958 도급 19,936 관급 8,022		2017.12.25. ~ 2020.09.23	1,771	♡♡엔지니어링외 1개사
■■■(◐◐)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로신설 5.89Km 관로개량 0.89Km 배수설비 281가구	2017.11.	2017.12.29. ~ 2020.04.21	4,515 도급 3,359 관급 1,156	☆☆(주), ○○산업(주)			
▲▲▲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증설 500톤/일 오수관로 1.88Km 배수설비 4가구	2018. 9.	2018.12.31. ~ 2021.01.29.	4,917 도급 3,114 관급 1,803	▦▦개발(주)			
▤▤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처리시설 증설 1,100톤/일	2018. 9.	2018.12.27. ~ 2021.01.25	4,850 도급 2,584 관급 2,266	☏☏건설(주)			
◎◎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120톤/일 하수관로 6.05Km 배수설비 166가구	2018. 9.	미발주 (18개월)	7,115 도급 5,818 관급 1,297	-			
◇◇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105톤/일 하수관로 4.70Km 배수설비 263가구	2019. 2.	미발주 (18개월)	6,561 도급 5,061 관급 1,500	-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

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1]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령 제55조1항에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공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2]”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교량, 터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공사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로 되어 있다.

1)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공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표2] 각 사업현장간 직선거리표와

---

1)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권한대행 업무

2) 「건설기술진흥법」,[별표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같이 ▣▣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과 ★★★ ○○○○○○ 간의 직선거리가 33.2㎞가 되는 등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없다.

[표2] 사업현장간 직선거리표

(단위:㎞)

구분	★★ 공공 하수처리증설	▦▦▦ 공공 하수처리시설	☆☆ 마을하수도	♠♠ 마을하수도	♡♡♡(▷▷) 하수관거	비고
■■ 공공 하수처리증설	-	33.2	26.2	2.1	16.6	
▼▼▼ 공공 하수처리시설	33.2	-	7.8	31.2	16.4	
◉◉ 마을하수도	26.2	7.8	-	24.6	9.9	
◑◑ 마을하수도	2.1	31.2	24.6	-	14.8	
▨▨▨(○○)하수관거	16.6	16.4	9.9	14.8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공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3]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업장간 직선거리가 20㎞이상에 해당되어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이 불가능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2) 공사현장 간 사업 추진시기 부적정

○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은 각 사업의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비슷하여 각 사업현장의 유사 공종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최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2개 이상의 현장에 대하여 통합감리업무를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을 하여야 했다.

[표3] 공사완료시기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비교표

3) 사업특성 및 발주청의 역가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특성(30%), 사업여건(25%), 공사수행방식(15%), 발주청 역량(30%) 적용하여 평가하여 평가점수(총점)가 65점일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공사명	공사기간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공사완료시기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비교	
			착공시기 차이	준공기간과의 차이
계	5개지구	2017.12.25. ~ 2020.09.23		
▷▷▷(♧♧) 하수관거 정비공사	2017.12.29. ~2020.04.21		차이없음	5개월 여유
♧♧♧ 공공하수 처리시설증설사업	2018.12.31. ~2021.01.29.		12개월	4개월 부족
◈◈공공하수 처리시설증설사업	2018.12.27. ~2021.01.25		12개월	4개월 부족
◑◑ 마을하수도	미발주 (18개월)		18개월 이상	-
▥▥ 마을하수도	미발주 (18개월)		18개월 이상	-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표3]의 용역기간과의 비교표와 같이 각각의 사업 착공시기가 12개월 이상 차이가 있고 2019.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미착공으로 인하여 통합건설사업관리의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준공기간인 2020. 9. 23일 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사 준공기간이 2021. 1. 29일이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 1. 25일로 착공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4개월 동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추가배치가 필요하여 감리비 165백만원[4] 추가비용이 예상되어 통합건설사업관리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앞으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적정성 검토와 공사현장간 직선거리 및 추진시기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명과 분야별사업관리자 1명을 4개월 배치시 추가금액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축감리용역 적격심사 및 발주검토 소홀

【기 관 명】 공주시(회계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시(회계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기부 채납받은 ☆☆동지역 택지지구 내에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가칭)▲▲▲▲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가칭)◉◉◉◉◉◉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계약현황〕

용역명	계약업체	계약금액(천원)	용역 기간	용역내용	비고
가칭)◐◐◐◐◐◐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 건축사사무소	199,706	2018. 2.22.~ 2019. 7.21.	건축공사 감리용역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① 감리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평가기준) 및 제6절(낙찰자 결정)에 의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별표2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경력기술자 평가방법에 의하면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자 등급계수는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공주시(회계과)에서는「가칭)☆☆☆☆☆☆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에 대한

적겸심사시 고급기술자[5]인 경력기술자의 등급을 특급기술자로 잘 못 산정[6] 하여 적격심사 점수를 95.32로 평가하였으나, 고급기술자로 재산정한 결과 94.82로 적격심사에 미달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감리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의하면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현장운영경비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의하면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등을 명시하여 입찰공고 하도록 되어 있어, 입찰공고시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하도록 공고하여야 하나,

- 공주시(회계과)에서는「○○○○○○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시 직접경비(13,737,377원, 부가가치세 제외, 착수내역서)에 대한 정산처리 규정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정산이 불가한 실정이다.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앞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경력기술자 등급을 철저히 확인하여 평가하시기 바라며, 관계 규정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의「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발주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시기 바랍니다.

---

5)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로 되어 있음.

6) 당초 산정결과 : 등급계수(1.0)×경력계수(2.0)×관리능력계수(1.1) = 2.2(배점 3.5)
재산정 결과 : 등급계수(0.75)×경력계수(2.0)×관리능력계수(1.1) = 1.65(배점 3.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용역의 공동계약 발주검토 소홀**

【기 관 명】 공주시(회계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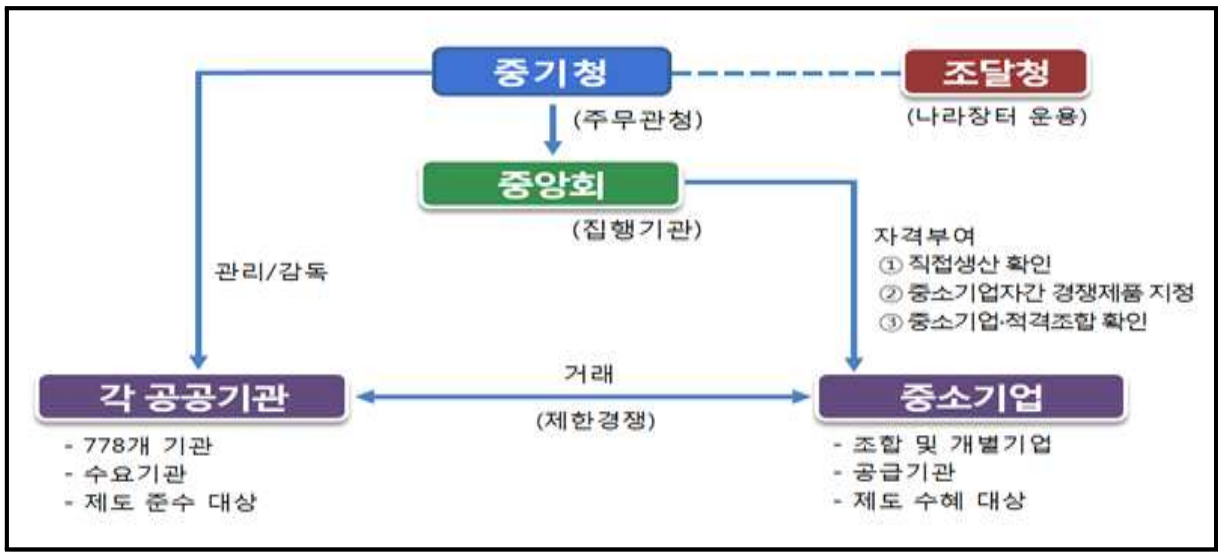
【지적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개 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2019.1월 현재 212개)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토록 하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림1-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체계】



○ 건설공사 설계 관련 경쟁제품 지정대상(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3호)

제 품 명	세분류(품명)	세부분류(품명)	특 이 사 항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지질연구 조사서비스	· 지질관련 용역으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금액(1천만원)이상 용역 · 도로하천 등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측 량	측량용역	측량용역	· 건설공사설계 관련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금액(3천만원)이상의 측량용역 · 도로하천 등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해 지정

○ 공주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포함 기술용역 시행 현황

⇒ '▣▣◐◐◐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77건/33,835백만원

※ 세부내역 : 붙임

나. 위법 · 부당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규정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시행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3호)에서는 "기타"산업군 중 '지질조사 및 탐사업'과 '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7]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공주시 회계과 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된 지질조사 또는

---

7) 특별한 사유(「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측량과업이 포함된 '■■ ○○호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의 계약사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용역에「판로지원법」제6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실시설계로써 1천만원 이상의 지질조사, 3천만원 이상 측량)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등의 방법으로 분리발주를 검토하였어야 하나, 문화재과에서 발주하여 2017.6.19.일 ㈜◎◎◎◎◎와 계약한 '공주산림휴양마을 출렁다리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의 경우「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에도 공동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붙임 1－지질조사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이 포함된 용역(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구 분	용 역 명	용역금액 (설계)	중기간 경쟁대상 품목 계상액		용역기간	발주형태
			지질조사	측 량		
계	계	1,727,590	46,971	69,406		
문화재과	◑◑◑◑◑◑◑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86,000	18,000	5,500	'17.06.19 ~' 17.12.17	공동계약 (기본설계)
	♣♣♣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1차)	1,250,590	18,971	46,868	'17.12.15 ~ '18.12.17	공동계약 (기본설계)
도로과	◇◇◇◇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391,000	10,000	17,038	'18.12.20 ~' 19.10.23	공동계약 (기본설계)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앞으로의 건설기술 용역등의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의 용역발주 시행은「판로지원법」에 의한 분리발주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건립사업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공주시(문화재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시(문화재과)에서는 공주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주제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감성형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을 건립하여 ♣♣♣♣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건립사업 계약현황〕

용 역 명	계약업체	계약금액(천원)	용역(공사)기간	용역(공사)내용	비고
▣▣▣ 건립에 따른 관리운영방안 및 콘텐츠개발용역	▲▲대학교 대표 ♥♥♥	92,381	2016.10.17.~2017. 4.14.	체험관 건립 기본방향 제시, 콘텐츠 개발 등	
◆◆◆◆◆◆◆ 건립사업 기본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10,808	2017. 7.17.~ 2017.12.22	체험관 기본설계	
◎◎◎◎◎◎◎◎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68,875	2017. 5.22~ 2018. 5.18	체험관 실시설계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① 학술연구용역 결과 미공개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및 제18조(용역 결과의 공개)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은「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을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공주시에 별도의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공주시(문화재과)에서는 2016. 6.27일「▲▲▲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심의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하였으나, 감사당일까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공주시에 별도의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② 설계용역 추진 부적절

○ 공주시(문화재과)에서는「●●●●●●●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입찰을 통하여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2018. 5.18.)하였으나, 2018. 6.22일 계약상대자(▧▧▧건축사무소)로부터 체험관 관리운영방안 및 콘텐츠 개발 용역보고서 검토결과 체험관 내부 평면계획은 담겨 있으나, 입면 계획 등 기본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시설계용역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바 ◐◐◐◐◐◐◐ 기본설계용역 반영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받아, 건축물 외관(지붕, 건물 외벽 등) 등의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사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 건립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추진하겠다는「▶▶▶▶▶▶ 건립사업을 위한 기본설계용역 발주 검토보고」를 득한 후 실시설계용역사인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6조(설계업무)에 의하면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계획설계는 디자인의 개념설정 및 연관분야의 기본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은 받는 단계이며,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또한 실시설계는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업무비율은 계획설계는 20%, 중간설계는 30%, 실시설계는 50%로 정하고 있으나,

- 공주시(문화재과)에서 발주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중간설계비용[8]으로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산정한 금액[9](11,748천원)으로 발주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다.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앞으로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시기 바라며,

○ 건축설계용역 발주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순공사비×설계비요율×30%×부가가치세 = 2,426,784천원×4.89%×30%×1.1 ≒ 39,161천원

9) 순공사비×설계비요율×45%×20%×부가가치세 = 2,426,784천원×4.89%×45%×20%×1.1 ≒ 11,748천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건립공사 감리용역 감독 소홀

【기 관 명】 공주시(문화재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시(문화재과)에서는 ◉◉◉◉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건립공사 감리용역 계약현황〕

용 역 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용역 기간	용역내용	비고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 건축사사무소	20,130천원	2018. 9.10.~ 2019. 6.30. (5.27일 용역중지)	건축공사 감리용역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① 월간감리보고서 미제출

○ 「♠♠♠♠♠♠♠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과업내용서」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에 의하면 익월 5일까지 월간 공정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감사당일까지 월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5회 미제출)

② 중간보고서 미제출

○ 또한,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계약상대자(◉◉◉◉◉건축사사무소)에서는 2018.12.10. 매트 기초 철근배근이 완료된 중간감리 보고서만 제출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당일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감리수행여부 및 공사품질에 대하여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감리보고서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보고서가 제출되도록 건축감리용역업체에 촉구하시기 바라며, 감리용역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및 대금지급 등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공주시(시민안전과 등 7개 부서)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하도급 대금지급 등 불공정행위 검토 관련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 대상사업 : 총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토목)공사 등 34개 사업장

※ 하도급대금지급, 건설기계대여금 관련 검토는 도급비 30억원 이상 10개 사업장 대상

○ 점검범위 : 2019.6월 현재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건설장비 지급 사항

○ 중점점검 사항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노임(근로계약서 작성) 지급 등의 적정 여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제도 등 적정 여부

· 기타 하도급 등 관련 법령준수 및 최종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 방지 활동 상황 등

나. 위법 · 부당사항

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검토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2014.10.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3호)」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급계약내용이나 하수

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한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공주시 문화재과에서는 '◈◈◈◈◈◈◈ 건립공사' 의 하도급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의 방수,미장,도장공사 하도급 통보는 하도급대상금액 140,472천원 대비 82.22%로, ㈜◑◑◑◑과의 석공사 하도급통보는 하도급대상금액 50,504천원 대비 84.94%로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재 확인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수·미장·도장공사는 산정금액인 148,413천원으로 하도급율 재산정한 결과 77.82%로, 석공사는 산정금액인 53,165천원으로 하도급율 재산정한 결과 80.69%로 적정 하도급비율인 82%에 미달되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공주시 건설과에서는 '☆☆☆ 지방하천정비사업' 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와의 가교공사 하도급통보는 하도급대상금액 504,064천원 대비 82%로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재확인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산정금액인 517,510천원으로 하도급율 재산정한 결과 79,9%로 적정 하도급비율인 82%에 미달되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하도급 대금지급 등 불공정행위 개선 필요

①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항목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음에도,

- 감사기간 중 제출된 근로계약 관련 서류와 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 붙임 【표1】과 같이 '■■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2단계)' 등 4개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고 건설공사 현장에

노무자로 근무하게 하고 있어, 추후 원수급인,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근로계약 존재여부, 노임 ,산재보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되는 실정이었으며 공사(하도급) 대금 거래 및 지급 경로의 투명성이 약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건설공사 현장 중에 '♣♣♣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명기된 임금지급 기일을 맞추어 노무자에 정당한 노무비가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20일정도 지연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급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었음.

② 건설기계임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해당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 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정당하게 보증서를 발급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7개 건설현장의 굴삭기 임대 등 27건(붙임【표2】참조)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있어 대여업자 등으로 부터 건설기계를 임차 · 사용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발주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③ 하도급 대금 등 지급 확인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하도급 3. 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규정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

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지급된 대가에 대하여 하수급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 · 확인하고 정당한 대금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시정 요구하고 7일 이내 시정 미이행 시 대가지급에서의 공제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장 8건(붙임【표3】 참조)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하수급인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제출받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시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④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급 지급 부적정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 15일 이내에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하수급인데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의 2건(붙임【표4】 참조) 하도급계약에서 원수급자가 25,403천원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음에도 하수급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지급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지방계약법(약칭) 및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관리철저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이 공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재해예방사업(하천 공사 등) 설계검토 개선 필요

【기 관 명】공주시(건설과)

【행 정 상】권　고

【재 정 상】없　음

【지적내용】

가. 용역 현황

구분	♡♡♡ 지방하천(보완설계)	■ ■ 소하천	비고
위　치	공주시 ※※면 ◁◁리 일원	공주시 ◑◑면 ◉◉리 일원	
용역량	하천정비 L:1.3km, 교량 1개소	하천정비 L:1.72km	
용역비	19,320천원	66,100천원	
기　간	2015.12~2016.02	2016.3~2017.3	
도급자	◉◉엔지니어링(주) 대표 ○○○	㈜☆☆☆☆기술공사 ○○○	

※ '♥♥♥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당초 설계는 충남도 시행('14) 후 ('15.3 인계인수) 후 보완용역 추진

나. 위법 · 부당사항(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지방하천 실시설계(보완설계) 시 적정 강우자료 미검토

○「하천법」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공주시 소관 지역에 위치한 76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천기본계획은 모두 수립 되었으나, 2019. 6기준 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0

년이 경과한 하천이 66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5년 이내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하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재해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함은 물론, 최근 5년 이내 타당성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련 강우자료 등이 설계시점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실시설계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 그런데도, 공주시에서는 ▲▲▲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보완)용역을 추진하면서 '○○○ 지방하천 기본계획(2007.11. 충청남도)'의 강우 분석자료를 최근 강우분석 자료와의 비교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설계하여 실시설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 한 사실이 있으며,

- 이에 대한 문제점은 위 관서에서 발주한 유사 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최근 10년의 강우량 분석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2007년 기본계획 시 80년빈도 177㎥/s에서 50년 빈도로 산정 하였음에도 217㎥/s로 분석되는 등 홍수량이 40㎥/s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계획하폭이 기 수립보다 최대 1.5m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 되는 등 하천 설계 시 중요 인자인 강우량 분석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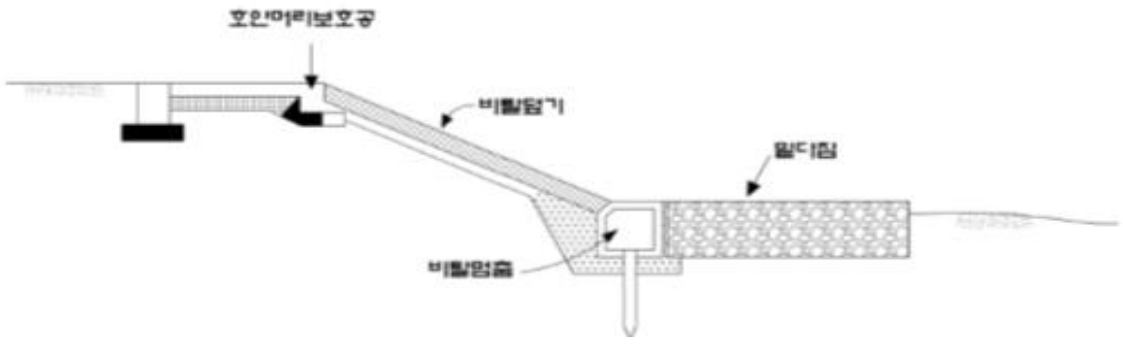
[표 1] 강우관측자료 변경에 따른 재검토 사례

구분	세부공종	기수립 기본계획	금 회	검 토 결 과
강우량분석	관측소, 관측기간	천안, 부여 관측소 (1973년~2006년, 34개년)	천안, 부여 관측소 (1973년~2016년, 44개년)	•기수립 기본계획 산정지점과 관계없이 유역 전체 천안, 부여 티센비율 적용 •금회 산정지점별 천안, 부여 관측소의 티센비율 적용
	강우자료	시우량 자료에 의한 확률강우량		
	임의시간 환 산	적용(한국확률강우량도 작성(2000.6, 건교부)	적용(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해양부)	•최근 연구기법이 반영된 임의시간 환산계수 적용
	빈도해석, 확률강우량	매개변수 추정방법 : PWM, 확률분포형 : Gumbel		
	강우강도식	천안 단기간-Sherman형 천안 장기간-Sherman형 부여 단기간-Japanese형 부여 단기간-Sherman형	전대수다항식(6차)	•금회 강우분포는 임의시간에 대한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해 강우강도식산정

구분	세부공종	기수립 기본계획	금 회	검 토 결 과
	면 적 확률강우량	미적용 (지점확률강우량)		
	강우의 시간분포	Huff 4분위법 (천안-3분위적용(최빈분위)) (부여-2분위적용(최빈분위))	Huff 4분위법 (천안, 부여 3분위적용)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부)'에서 3분위 채택을 원칙(단순 최빈분위보다 실무적 안전측을 고려)
홍수량산정	임 계 지속시간	200분 (80년빈도 하구지점)	170분 (50년빈도 하구지점)	•강우지속기간에 따른 첨두유출량 고려
	유효우량 산 정	NRCS유출곡선지수법 AMC-Ⅲ, 정밀토양도 (CN : 88.26~88.46)	NRCS유출곡선지수법 AMC-Ⅲ, 정밀토양도 (CN : 82.00~83.54)	•최근 호우사상에 대한 치수적 안전도를 고려하여 AMC-Ⅲ적용 •CN(유출곡선지수) 값 산정의 정확도 향상
	도달시간 (Tc)	Kraven Ⅱ공식	연속형 Kraven	•유속의 불연속 발생 결과 보완을 위하여 연속형 Kraven공식적용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부)' 연속형 Kraven공식 권장
	유역홍수량 산정	Clark 유역추적법		
	유역저류 상수산정	-	Sabol 적용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부)' 합리적인 공식 적용
결 과 (하구기준)		**177㎥/s** **(80년빈도)**	**217㎥/s** **(50년빈도)**	•최근강우 반영, Huff 분포 채택분위, 도달 시간 등의 영향으로 홍수량 증가

2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 시 호안공법 산정 불합리

○「소하천설계기준(2012)」 제3절 제방 및 호안 6.3.2(호안)에서는 호안은 최소 경비로 최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비탈덮기, 기초, 비탈멈춤, 밑다짐의 네 부분[그림 1 참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호안의 구성

- 호안의 설치 위치와 연장은 하도 내의 수리현상, 세굴, 퇴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급류 하천이나 준급류 하천에서는 전 구간에 걸쳐서 호안을 설치하고 완류 하천에서는 수충부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호안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소류력 또는 유속에 따라 호안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리학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 경

관성, 유지관리 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주시에서는 소하천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반영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 적정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감사 기간 중 추진된 '▦▦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의 실시설계 시 사면경사를 1:0.5~1:1.0으로 계획하면서 유속에 다른 소류력 검토를 구간별 세부검토 없이 사업 전구간(1.73km)에 대하여 소류력 3.24kgf/㎡ ~ 25.57kgf/㎡ 로 산정 후 허용 소류력 40kgf/㎡를 일괄 적용하여 전구간에 자연석 쌓기(3,936㎡ / 429백만원(제경비 미포함))로 반영하는 등 실시설계에 따른 호안적용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 진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각종 재해예방사업(하천・소하천공사 등)을 위한 설계 검토 시 적정한 분석자료 적용 및 관련규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공주시(시설안전과 등 10개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일반현황

○ 감사배경 : 최근 3년간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약 1,642억원의 규모로 시행 중에 있었고, 그간 종합감사 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관행적 부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

○ 대상사업 : 신관동 중로1-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34개 사업장

【표1-공주시 대규모 건설공사 현황(최근 3년간)】

대상사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도 급 액	관 급 액	보 상 비	
34건	164,166	92,156	48,303	23,707	

나. 위법 · 부당사항(개선되야 할 사항)

① 감사결과(총평)

・공주시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규정 준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됨.

・현장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은「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시행 1997.7.21.)에 「시설물안전법」상 1,2종 시설, 10m 이상 굴착, 폭발물사용, 계약에 명시된 경우 등에 수립하도록 제정된 이래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8조(시행 2019.7.1.)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었으나 공주시 공사감독(관리)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발주부서 및 현장 건설기술인들은 최초 제정시의 규정으로 인지하고 있는 등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준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들을 빈번한 관련 법규의 개정을 반영하여 실무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업무프로세스의 수립이 요구 됨.

② 공사발주부서에 대한 문제점 감사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에서 발주자는 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서 심사(보완지시 및 개선) 후 승인해야(「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제1항, 시행령 제90조 시행 2014.05.23.)함에도, 공주시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감사범위에 포함되고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26건 중에서 상기 절차를 모두 준수한 공사는 없었으며

- 책임감리공사인 경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0조제2항 시행 2015. 6. 30.)는 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임.

- 또한 발주자는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17.7.1 제10조제2항)하고 연1회 이상 실시해야(「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0조 시행 1995.10.1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 시행 2019.07.01. 현재)함에도, 공주시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감사범위에 포함되고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25건 중에서 상기 절차를 모두 준수한 공사는 없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에서 발주자는 계획서를 착공 전(「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 시행 2019.07.01)에 제출받아서 심사 (보완지시 및 개선) 후 승인해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제2항 시행 2014.05.23)함에도 공주시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감사범위에 포함되고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22건 중에서 상기 절차를 모두 준수한 공사는 없었으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 공사인 경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시형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65조제2항 시행 2015. 6.30.)는 지침에도 위배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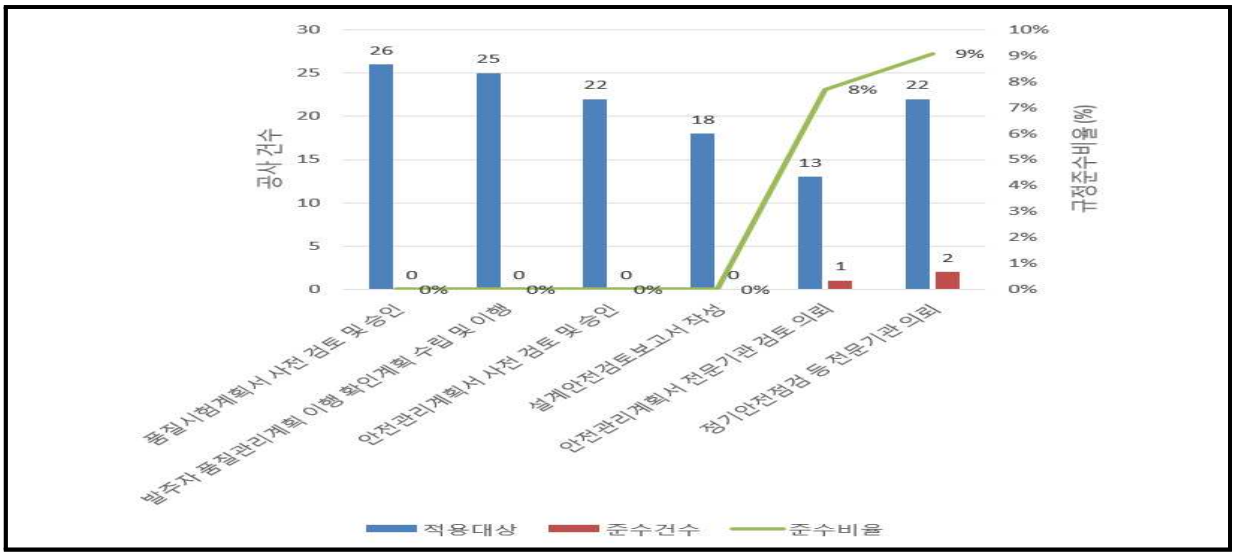
· 아울러 설계발주단계에서의 검토과정과 관련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설계성과납품 품목에 명시해야(「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5조제2항 시행 2016.10.31)하며 공주시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감사범위에 포함되고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18건 중에서 상기 절차를 준수한 공사는 없었으며,

- 안전관리계획서를「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심사하는 경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4항 시행 2017.12.29)하고 {단,「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시행 2014.05.23)} 그 결과를 20일 이내(2016.05.19이전은

15일 이내)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시행2016.05.19.)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주시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감사범위에 포함되고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13건 중에서 상기 절차를 준수한 공사는 1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시행 2014.05.23)에 따라 건설업자 등이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점검(매일자체 안전점검 제외)을 받아야(이전에는 자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주시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감사범위에 포함되고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22건 중에서 상기 절차를 준수한 공사는 2건에 불과 하였음.

【표2-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규정 이행실태 분석】



③ 주요 현장별 공사 착공 및 준공단계에서의 문제점 감사 사례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준공시 제출된 품질시험검사 대장에 제시되어 있는 품질시험의 목표값의 근거[10] 확인 불가

⇒ 점토의 투수계수 목표값을 $1\times10^{-3}\sim1\times10^{-7}$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1만배에 달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 품질시험기준으로 부적합.

⇒ 실시설계보고서 p.173 '[표 7.10] 검토결과'에 의하면 점토코어를

---

10) 참고 : '실시설계보고서 제10장 부록 10.2 긴급안전진단보고서 3.4.4 시추조사 나. 투수시험'의 투수시험 내역 총괄표에는 중심점토의 현장투수시험결과가 $(3.08\sim5.13)\times10^{-4}$cm/s로 제시되어 있음. 품질시험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는 착공계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확인할 수 없음.

해석에 반영하지 않았고 침투해석도 실시하지 않아서 점토 코어의 설계 목표값을 확인할 수 없음.

(◐◐ ▼▼▼▼저수지정비사업)

- ◐◐ ▼▼▼▼저수지정비사업의 착공계에 품질시험계획서가 누락되어 있고 준공계에도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가 누락되어 있음.
- 품질시험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는 착공계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 마을간 연결도로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에 해당하므로 착공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였어야 함.
- 품질시험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는 착공계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착공 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였어야 함.
- 품질시험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는 착공계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 결과

(♧♧♧ 지방하천 정비사업)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외부에 의뢰한 암석 시험 시료를 봉인 또는 확인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 정기안전점검 계획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누락되었고 미시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 및 제58조

(◈◈◈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1단계))

- 안점점검일지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일일안전점검을 지도 감독한 실적이 미흡함.

・현장 실험실에 보관된 밀도시험 기구와 현장에서의 시험결과로 보관하고 있는 성적서상의 밀도시험 기구가 서로 상이하여 이전 시험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실정임.

(▨▨▨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2단계))

・정기안전점검 계획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누락되었으며 미이행.

・안점점검일지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일일안전점검을 지도 감독한 실적이 미흡함.

(★★★(○○)하수관거 정비공사)

・정기안전점검 계획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누락되었으며 미이행.

・안점점검일지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일일안전점검을 지도 감독한 실적이 미흡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외부에 의뢰한 암석 시험 시료를 봉인 또는 확인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3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정기안전점검 계획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누락되었으며 미이행.

・안점점검일지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일일안전점검을 지도 감독한 실적이 미흡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외부에 의뢰한 암석 시험 시료를 봉인 또는 확인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3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앞으로의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부터 준공단계까지의 품질관리에 있어 금번 감사지적 사항과 같이「건설기술진흥법」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에 미달되게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 부서에 공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공사감독 등 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현장실험실에 보관된 밀도시험 기구와 현장시험 결과로 보관하고 있는 성적서상 시험기구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 ☏☏☏☏☏ ◇◇◇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그동안 부당한 현장시험 사례가 없었는지 명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1. 처분 요구서

【제　　목】 ◑◑◑~▲▲▲ 마을간 연결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공주시(도로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감　　액(60,000천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공주시(도로과)에서는 [표1]과 같이 "■■■~♥♥♥ 마을간 연결도로공사"를 2018. 7. 4. ㈜♠♠♠(대표이사 ◈◈◈)와 장기계속공사[11] 계약(총공사 부기금액 3,979백만원, 공사기간 720일)하여 2018. 7. 15. 착공하고 2020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1]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 개요

공사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시공사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	공주시 ▣▣면 ▦▦▦~○○○ (면도101호)	L=1.0㎞ B=10m(2차로) 교량2개소	7,481 도급 3,979 관급 3,502	전체 720일 1차분 : 2018.7.15~2019.11.27. 2차분 : 2019.6.4~2020.11.17.	㈜▦▦▦ 대표 ☎☎☎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 부당사항

1) 공사 시공 전 설계검토 미이행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11)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124조에는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 등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 설계도면 등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시 설계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당해 사업 일반시방서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사항에는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에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오류, 누락,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공주시(정책사업과[12])에서는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시행 전 설계서 등의 검토를 하지 않아 금번 감사기간 중 설계서, 공사추진현황 등을 검토한 바,

❶♣♣♣(L=165m)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2종시설물(100m이상)로 공사 추진시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비 등이 당초에 설계 누락된 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❷교량배수시설은 교량 포트홀(Pothole)[13] 및 박리(Strpping)[14], 교량내구수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가를 검토하여야 하나, 배수시설 도면 누락으로 적정한 시공을 위

12) 2019. 1. 1.일 조직개편으로 도로과로 사업이 이관됨
13)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시에 포장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
14)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타르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

해서는 도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품질시험관리 업무 소홀

❶ 품질시험계획 검토 승인 및 이행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발주자,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업무수행지침” 제139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 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시공자가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또한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시공사(㈜◉◉◉)는 착공계 제출 시 주요공정대로 토공용 흙(2,703㎥) 등에 대한 함수비 시험, 콘크리트에 대한 배합설계 등을 시험빈도에 따라 자체 실시한다고 제출하였으나

- 현장내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시험실 20㎡이상) 및 시험장비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자체시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품질시험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나 승인 및 확인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공사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❷ 품질관리자 의무교육 미이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의거 위 공사는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품질관련 초급기술자 1명이상을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는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9. 4. 17. 시공사에서 퇴사로 인한 품질관리자 변경 신청한 건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사항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변경 승인하여야 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거푸집 기능사인 부적격 기술자를 변경 승인함으로써 시험관리 업무에 소홀 및 실제로 품질관리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안전관리계획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업무수행지침”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고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의 확인 및 보완 후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착공 전 별도의 검토・심사・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현장내 안전관리 검토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내 안전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4) 관급자재(■■■■■[15]) 물품검수 부적정

○ 공주시(도로과)에서는 [표2]와 같이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에 교량설치에 필요한 철감빔 20본을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하여 2019. 5. 20. ㈜▣▣▣▣▣와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 관급자재(◈◈◈◈ △△)"를 1,818백만원 계약하여 2019. 8. 31. 까지 납품예정으로 있다.

[표2]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 관급자재 계약현황

계약 건명	품 명	수 량	계약금액	납품기한	인도조건	납품회사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 관급자재	철강빔	20본 ◈◈◈ 16본 ♥♥♥ 4본	1,818백만원	2019. 8. 31.	현장설치도	㈜▨▨▨▨▨ 대표 ○○○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 받은자(검사공무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15) 교량상부의 거더를 후판을 사용하여 플레이트 거더형태로 제작한뒤 라멘구조를 만들기 위해 단순지지방식으로 연결부를 형성하고 상부 슬래브를 타설하여 완성한 발명품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또한「공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8조, 제29조에는 물품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하고,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이 검수한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공주시(도로과)에서는 공사감독자(검사자) 및 분임 물품출납원(검수자)은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 관급자재(♠♠♠♠ ☎☎)”에 대하여 계약서・규격서・설계서 등에 맞게 납품・설치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했다.

○ 그러나 관급자재(▶▶▶▶ ♧♧)를 검수하면서 공사감독(◉◉◉◉◉ ◈◈◈)이 2차례(2019. 5. 20., 2019. 6.14), 팀장(▣▣▣▣▣ ◑◑◑) 2019. 6.14.에 계약자인 ㈜☆☆☆☆☆ 포항공장에 현지출장 관급자재(▷▷▷▷ ○○) 16본에 대하여 공장검수를 실시하여,

- 2019. 6월말 현장설치 예정으로 제작 완료된 관급자재(♠♠♠♠ □□)에 대해 관급자재비를 지급한다고 2019. 6. 14일 도로과장(■■■■ ▲▲▲)의 결재를 득하였다.

- 그리고 2019. 6. 20. 계약자인 ㈜◇◇◇◇◇로부터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관급자재(♤♤♤♤ ▧▧) 20본 중 16본에 대하여 2019. 6. 21. 제작・설치비 포함 1,641,367,960원을 지급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금번 감사기간(2019. 7. 8. ~ 12) 중 “※※※~☆☆☆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의 현장설치 여부를 점검한 바, 아직까지 관급자재(◇◇◇◇ ☞☞)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관급자재(♧♧♧♧ ◈◈)의 제작・설치비까지 과다 지급하여 물품납품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추후 정상적인 사업추

진이 어려울 시에는 상당한 손실을 당할 수 밖에 없다.

5) 설계변경 검토 및 공사감독 소홀

❶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미준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의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2017. 9. 27.) 규정에 따르면,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Km 이상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공사구간이 0.2km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의무 사용량(제품 소요량의 40%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표3] 순환골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사업비변동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차 액
소 계	571,055	537,709	△ 33,346
도급공사비	184,355	177,109	△ 7,246
관급자재대 (2019.7.8 단가기준)	386,700	360,600	△ 26,100

관 급 자 재	수 량 (ton)	단 가 (원)		금 액 (천원)		차 액 (천 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아스팔트콘크리트 (BB2,t30mm,가열,3등급,기층)	2,838	64,230	55,030	182,284	156,175	26,100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의무사용량을 반영하는 설계변경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33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❷ 세륜세차시설 및 축중기 미설치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제1조 및 제3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7조에 따르면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장현장에서 과적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공사는 사토 운반량이 29,244㎥로 도급내역상 세륜세차시설(2개소) 및 축중기(1개소)가 반영되어 있어 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사토량이 대부분 반출되고 현장유용계획으로 세륜세차시설 및 축중기가 필요 없는 상태로 설계변경을 통해 27백만원을 감액 조치할 필요가 있다.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❶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검토, 품질관리계획 업무 이행,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업무 및 지방계약법 등에 의한 계약이행, 자재・물품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❷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반영, 설계변경 하여 33백만원을 감액하고, 설계내역에 반영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등 27백만원을 감액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1. 처분 요구서

【제　　목】▣▣▣ ◐◐◐◐◐◐◐◐ 증설사업 설계검토 소홀

【기 관 명】공주시(상하수도과)

【행 정 상】시　정

【재 정 상】감　액(59,400천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 업 명 : ◉◉◉ ▦▦▦▦▦▦▦▦▦ 증설사업

○ 사업위치 : 공주시 ※※면 ★★리 일원

○ 사업내용 : 오수관로(D200mm) L=1.87㎞, 하수처리시설 증설 Q=500㎥/일

○ 사 업 비 : 4,918백만원(도급 3,114, 관급 1,804)

○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　　○ 공정율 : 9%

○ 도 급 자 : ◀◀◀◀㈜ 대표 ♤♤♤

나. 위법 · 부당사항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 및「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제124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규정에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5.(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규정에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공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 ◑◑◑◑◑◑◑◑ 증설사업" 을 추진하면서 ❶ 사업구역 내 가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계측관리를 반영 하였으나, 사업지구 외 수량이 포함된 오류[2지구 23백만원(제경비 제외)]사항이 확인되었고, ❷ 설계내역 상 하수처리장 토공 관련 잔토운반 및 유용토 운반이 반영 되어 있으나, 현장내 발생된 잔토에 대하여 현장 내 적치 시공중으로 이에 대한 조정[잔토 및 유용토 6,050㎥/18백만원(제경비 제외)] 필요함에 미조치 사항이 확인되는 등 총 59백만원(표 1 참조)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설계 재검토 대상 현황

공사명	계약기간	도급자	도급액 (백만원)	공종	재검토 수량				재검토 금액(천원)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총계	2건								85,360	25,960	감59,400
◐◐◐◈◈ ♧♧♧♧♧♧ 증설사업	'18.12.~ '21.01	◈◈◈◈㈜	3,114	잔토운반	㎥	4,206	1,844	감 2,362	10,216	4,479	감5,737
				유용토운반	㎥	3,363	453	감3,688	13,927	1,524	감12,403
				계측관리	식	3개소	1개소	감 2	34,900	12,195	감22,705
				제경비	식				26,317	7,762	감18,555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변실 세부 재검토 대상 별첨)

【처분요구】

공주시장은

○ ▼▼▼ ☆☆☆☆☆☆ 증설사업 관련 현장여건 불부합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감액검토 59,400천원)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